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기덕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 이민석, 이봉준, 이상욱, 이상훈, 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임만균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최진혁, 한 신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6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"한옥밀집지역"에 대한 정의를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관련 조례가 2018년 1월 4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근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"한옥밀집지역"을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. 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